2025년도 계약직(주택연금상담) 채용공고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한민국 주택금융시장을 개척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5월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전형절차 진행 시 모집분야(운영부점)별 합격배수를 운영하므로 모집분야(운영부점)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발견 시 별도 통보 없이 모두 지원 취소 처리 또는 불합격 처리

(예시) 일반전형Ⅰ의 '부산지사'와 일반전형Ⅱ의 '부산지사' 동시지원 등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일반전형Ⅰ과 일반전형Ⅱ는 입사일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입사지원에 참고하실 것

1. 모집분야 및 주요업무

□ **(모집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총 6명**

구분	모집분야			채용예정인원	담당업무
	계약직무	전형구분	운영부점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주택연금 상담	일반전형Ⅰ	경기북부지사	1명	■ 주택연금 유선 안내 및 상담 ■ 주택연금 신청 접수, 담보주택 조사 ■ 주택연금 약정 등을 위한 자서업무 등
			부산지사	1명	
		일반전형Ⅱ	강원서부지사	1명	
			부산지사	1명	
			대구지사	1명	
			광주지사	1명	

※ [구분경쟁] 전형절차 진행 시 모집분야(운영부점)별 합격배수 운영

※ 일반전형Ⅰ은 '25.7월 초, 일반전형Ⅱ는 '25.10월 초 입사 예정

※ 공사 사정에 따라 인사이동을 통해 **타 부점(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음**

※ 입사 후 인사이동 등에 따라 **담당업무 변경 가능**

□ **운영부점 상세주소**(공고일 기준)

운영부점	주 소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66(백석동, 재능교육빌딩) 10층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9 한화생명빌딩 5층
강원서부지사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 4층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덕산동 110) 22층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 (치평동 1208-2번지) 7층

2. 지원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아래의 지원자격 외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

□ 만 60세 이상[1]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5.6.11) 기준)

1)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시니어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협약에 따라 참여 자격요건인 만 60세 이상으로 지원자격 설정

□ 근무 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채용조건

□ **(고용형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09:00 ~ 18:00) 근무*

*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유연근무 가능

□ **(보수수준)** 세전 월정액급여 2,200천원

□ **(계약기간)** 채용일(일반전형 I 은 '25.7월 초, 일반전형 II는 '25.10월 초)로부터 1년

○ 공사 「주택연금상담직 운영기준」에 따라 소정의 평가를 거쳐 재계약 가능하나, 정규직 전환은 불가

□ **(기타사항)** 그 외 근로조건은 공사 「사무직원 운영규정」 등 공사 내규에 따름

4.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5.28(수) ~ 6.11(수) 17:00

○ 마감시간(6.11.(수) 17:00)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전날까지 제출

○ '임시저장' 상태로는 정상접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제출' 처리

□ **(입사지원서)** 우리 공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

□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https://hf.recruitlab.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등 불가)

5. 전형 절차 및 일정

□ 전형 절차

1 채용공고		2 서류전형		3 면접전형		4 선발
입사지원서 접수 '25.5.28.(수) ~ '25.6.11.(수) 17:00	▶	6월 중 5배수 선발	▶	6월 중 1배수 선발	▶	입사예정일 '25.7월 초 또는 '25.10월 초

※ 모집분야(전형) 별 입사일 상이(일반전형Ⅰ은 '25.7월 초, 일반전형Ⅱ는 '25.10월 초 입사 예정)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전형 일정**(전형절차별 일정, 장소는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일 정
■ 입사지원서 접수	5.28.(수) ~ 6.11.(수) 17:00
■ 서류전형 평가	6월 중
■ 면접전형	6월 중, 서울에서 진행 예정
■ 입사예정일	7월 초(일반전형Ⅰ) 또는 25년 10월 초(일반전형Ⅱ)

6. 우대사항 [각 전형별 가점 부여]

※ 가점 대상자(동점자 처리 시 우대하는 보훈대상자 포함)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을 기재(우대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

※ 합격 제한자(☞ "8. 전형별 선발인원 등 " 참조)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

※ 원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전형단계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 만점으로 처리

□ 관련법령 등에 따라 **각 전형별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직무관련 우대사항 대상자에게 우대 가점 부여하며,** 우대사항 대상자 여부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본 채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채용공고문 상 운영부점)에 해당하므로 **보훈대상자는 가점(만점의 5% 또는 10%)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구 분		가점비율	가점 세부대상
보훈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중증장애인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수급자	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의 자녀
	한부모 가족	만점의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 가족	만점의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새터민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립 준비 청년	만점의 5%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퇴소(또는 가정위탁 보호조치 종료)한지 5년 이내인 자로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가능한 자 (※ 2020.6.11.이후(당일 포함) 퇴소 또는 보호조치 종료)

※ 한부모가족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

–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 (「한부모가족증명서」 "1. 성명" 란에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발급 가능해야 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의 자녀이거나,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람

○ **(직무가점) 가점 부여 대상 요건 (①경력, ②자격증)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자에게 각 전형단계별 가점을 **만점의 3%** 부여

① 경력		② 자격증** 중 하나 이상
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근무경력 5년 이상**	&	국제재무설계사(CFP)
		한국재무설계사(AFPK)
		노후재무설계상담사(AFPA)
		은퇴설계전문가 Master과정(한국금융연수원)
		은퇴설계전문가(ARPS, 한국FP협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한하며 **근무처 직인이 날인된 경력(재직)증명서를 통해 근무처, 근무기간, 직위 및 직급 등이 확인**되어야 함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갱신 여부, 기간 만료 여부 등 확인)**

[참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운영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및 증권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우대사항은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이후 전형단계 응시 불가)**

* **증명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 ☞ "7. 제출 서류 등" 참조

7. 제출서류 등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사지원서에 사실과 다른 중대한 허위사실 기재 시**(단순 오기,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 제외) **입사지원 또는 합격을 취소**(입사 후 발견 시 즉시 면직)

※ **전형별 합격자가 기한* 내 증명서류 또는 추가정보 미제출 시(우대대상이 아님에도 우대대상으로 기재한 경우 포함) 증명 불가 또는 이후 전형단계 응시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이후 전형단계 응시 불가)**

*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4일 이내** ☞ **발급 가능 여부, 발급 요령 등 사전 숙지**

※ **제출한 증명서류 및 추가정보는 우대사항 확인, 면접위원 제척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실 것)

※ **우대사항 증명 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이후('25.6.11(수)), 마감일 당일 포함)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재발급 불가능한 서류는 제외)

□ 지원자격, 경력사항,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시기·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해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최종 합격 시 실물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이후 전형단계 응시 제한

○ **(지원자격 증명서류)** 주민등록초본

○ **(경력사항 증명서류)** 경력·재직증명서*(경력사항 기재자에 한함)

* 근무처 직인이 날인되어있어야 하며, 근무처, 근무기간, 직위 및 직급 등이 확인되어야 함

○ **(우대사항 증명서류)** 세부 구분별로 아래와 같음(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6.11)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마감일 당일 포함)

- 직무관련 우대사항 대상자 증명을 위한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실 것

<우대사항 구분별 증명 서류>

구 분	세부 구분	증명 서류
장애인	장애인(중증 포함)	①장애인증명서 1부, ②중증장애인확인서 1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다문화가족	①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③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1부(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④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1부
	보호대상자(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1부
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직무가점	직무가점 대상자	①경력사항 증명서류 1부 ②해당 자격증 1부(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분야이므로 가점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 **(추가정보 입력)**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위원 제척을 위한 공사 근무경력, 정부「채용 성차별 해소방안(18.7월)」에 따라 면접단계 성차별 예방을 위한 채용 기록관리 목적으로 성별 등 정보 수집*

* 기한 내 미입력 시 이후 전형단계 응시 제한

□ **(기타필요서류)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 입사필요서류와 온라인으로 기 제출한 서류의 원본 등 제출 (최종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취소**(입사 후 발견 시 징계 면직, 단순 오기·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일정, 채용과정, 채용여부는 채용홈페이지(https://hf.recruitlab.co.kr)에서 확인 가능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의 문자전송 및 전자우편(e-mail) 방식으로 채용절차 등을 고지함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비상연락처**는 전형절차 중 건강상 응급상황 발생 등에만 활용 예정(비상연락처로는 채용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지 않음)

※ 지원자가 오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로 고지된 경우, 지원자의 개인적 사정(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으로 고지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공사가 채용절차 등을 고지한 것으로 봄

○ 지원자의 모든 제출 서류는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받음(단, 온라인 제출 서류는 삭제 처리)

※ 채용서류 반환 관련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참고

8. 전형별 선발인원 등

□ 합격 제한자

○ 선발 전형별 합격 제한자는 이후 전형단계 응시를 제한하고 모든 전형 절차에서 가점 부여 및 (예비)합격자 대상에서 제외

<합격 제한자 구분 및 내용>

합격 제한자 구분	내 용
원점수가 선발 전형별 만점의 40% 미만인 자	· **원점수** : 각 전형단계별 평가위원의 점수를 단순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지원자격 미충족자	· “2. 지원자격” 을 충족하지 않은 자
미응시자, 중도포기자	· 서류전형 : 해당 없음 · 면접전형 : 지정된 시간에 면접에 응시하지 않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퇴실)한 경우

합격 제한자 구분	내 용
기한 내에 선발 전형별 제출 서류 미제출 또는 추가 정보 미입력한 자	· 제출 서류 또는 추가 정보 :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제출 및 입력을 요청 예정** ※ 각 선발전형 합격자 발표할 때마다 제출 서류 또는 추가 정보 입력 사항 안내 예정
불성실 기재자	· **직무능력기술서 또는 직무적성기술서의 1개 항목이라도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②의 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모집분야별 중복 지원자	· 합격 제한자에 해당(입사 후 발견 시 합격 취소, 면직)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ㅇ 원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지원자 수가 선발배수에 미달 시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공사 이해도, 직무능력, 의사표현력, 책임감·친화력 평가

ㅇ 원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분야별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및 예비 합격자(합격자 및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 선발

□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준수**

※ 공사는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통하여 정부에서 주최하는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선정**

9.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를 이용(https://hf.recruitlab.co.kr)**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

□ 채용비리 발생 시 공사「채용세칙」제35조(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라 피해자 구제조치 실시

구 분	피해자 구제 방안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예비)합격자 지위부여
채용절차가 종료된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 1회 부여 –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

□ **동점자 처리기준**

○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보훈대상자**[1] **> 장애인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직무관련 우대사항 대상자 > 직전 전형단계 총점순**[2]으로 선발

1) 10% 가점 받는 자 > 5% 가점 받는 자

2)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평가기준 상의 "직무능력" 항목 득점(원점수) 순

- 처리기준 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동점자 순위에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만 적용

○ 모든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입사지원서에 보훈대상자, 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부, 직무관련 우대사항 대상자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자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전형별 (예비)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의 순위 산정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동점자 처리 실시

□ **(대체 합격) '25.9.30*(당일 포함) 이내** 당해 채용공고 모집분야(운영부점)별 최종 합격자(예비 합격자 포함)가 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합격 취소, 입사 포기,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해당 모집분야(운영부점)별 **예비 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최종 합격자로 선발**

* 일반전형 II의 경우 '25.12.31(당일 포함)

* 기한 경과 시 예비 합격자 지위는 자동 소멸함

[대체 합격 선발 관련 유의사항]

- 예비 합격자가 입사 포기할 경우, 채용담당직원의 전자우편으로 「입사포기 확인서」(소정양식 별도 고지 예정)를 제출해야 함
- 공사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의 문자전송 및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대체 합격 선발 사실 및 대체 합격자 서류(인적정보서 등) 제출 또는 추가 정보 입력을 3회(영업일 기준 1일 1회)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최종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예비 합격자를 대체 합격자로 선발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고지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① 지원자가 오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공사 또는 채용대행업체가 고지한 경우
 ② 지원자가 오입력한 전자우편 주소로 공사 또는 채용대행업체가 고지한 경우
 ③ 지원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공사 또는 채용대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원자가 채용절차 등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
 ④ 기타 ①~③의 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최종 합격 전 온라인 제출서류(제출한 추가정보 포함)**는 **우대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매 전형 참여시 **유효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①기간만료 전 여권, ②운전면허증, ③주민등록증, ④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⑤주민등록번호(전체 13자리)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유효기간이 있는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이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www.mobileid.go.kr 참고)에 한해 인정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금지자 및 합격 취소 관련 내규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세칙」 제23조(합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2. 채용비리 연루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

NCS 기반 채용 직무기술서[계약직(주택연금상담)]

<table>
<tr><td>채용분야</td><td colspan="4">주택연금상담</td></tr>
<tr><td rowspan="2">직무분류 체계</td><td>대분류</td><td>중분류</td><td>소분류</td><td>세분류</td></tr>
<tr><td>3. 금융·보험</td><td>1. 금융</td><td>3. 금융영업</td><td>1. 주택연금상담(창구사무)</td></tr>
<tr><td>공사 주요사업</td><td colspan="4">■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공급
■ 유동화증권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 등(MBS, MBB)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채권시장으로부터 장기저리의 자금을 조달하여 정책모기지 공급 재원 확보
■ 주택보증 : 전세자금대출 및 아파트중도금 대출에 대한 개인보증 공급,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사업자보증 등을 공급
■ 주택연금 : 만5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종신연금 수령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공급</td></tr>
<tr><td>직무수행 내용</td><td colspan="4">■ 주택연금상담 : 주택연금 유선 안내 및 상담, 주택연금 신청 접수, 연금담보주택 조사, 주택연금 약정 및 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을 위한 자서업무 등</td></tr>
<tr><td>필요지식</td><td colspan="4">■ 금융 관련 지식, 주택연금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 부동산 권리관계 관련 지식</td></tr>
<tr><td>필요기술</td><td colspan="4">■ 의사소통능력,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 정확하게 주택연금상품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관련 규정 및 절차 설명 능력, 제출서류 진위여부 파악능력</td></tr>
<tr><td>직무수행 태도</td><td colspan="4">■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 젊은 직원들과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자세,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준수, 고객과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문제해결 태도, 담당 고객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td></tr>
<tr><td>자격요건</td><td colspan="4">■ 만 60세 이상(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td></tr>
<tr><td>참고사항</td><td colspan="4">■ 참고사이트 : [NCS] www.ncs.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 NCS 개발 동향과 공사 주요사업 변경 등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td></tr>
</table>

전형별 평가기준(계약직(주택연금상담))

□ 서류전형

대상	평가항목	평가기준
직무능력 기술서	직무능력	- 지원분야의 지식, 경험, 경력이 있는가 - 지식 및 경험의 업무 활용・응용 능력이 있는가
직무적성 기술서	지원사유	- 지원사유가 타당하고 구체적인가 - 입사에 대한 열의가 있는가
	인재상 부합도	- 지원자의 장점이 공사의 인재상과 부합하는가 - 지원자의 장점은 공사업무에 활용 가능한가
	봉사활동, 공익지향	- 봉사활동 등 공익지향 활동 경험이 있는가 - 공익지향 마인드를 보유하고 있는가
	주택연금 이해도	- 주택연금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가 - 마케팅 방안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가

□ 면접전형

평가항목	평가기준
공사 이해도	- 공사의 전반적인 업무 및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직무능력	- 직무관련 교육, 경험, 경력 등이 있으며 공사에 활용 가능한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직무관련 경력, 직무능력기술서 등 직무능력 심층검증 - 지원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 있는가 - 성과 창출 과정에서 희생과 배려, 경청의 자세를 보였는가
의사표현력	-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가 - 본인의 의사를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가
책임감·친화력	- 성실성 및 책임감이 있는가 - 화합 및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가